보 고 사 항

□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 2000. 6. 13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4호)

<공고내용>

- 집회일시 : 2000. 6. 20 (火)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 — 2000. 5. 27 집행부 이송

- ○ 공 포 일 자 : 2000. 6. 16
-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39호

□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

○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00. 6. 15 의원발의

- 발 의 자 :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회 기 : 2000. 6. 20. ~ 7. 4 (15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2000. 6. 15 의원발의

- 발 의 자 :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2000. 6. 15 의원발의

-주 문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계획

일 시	보 고 대 상	보고자
2000. 6. 21 (水) 10:00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과	해당 실·과·소장
2000. 6. 22 (木) 10:00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
2000. 6. 23 (金) 10:00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제안이유

·2000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군정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00. 6. 17 군수제출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을 받기 위함

-'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결 산 액		
		세 입	세 출	이월액
계	160,625,702	152,421,954	128,170,130	24,251,824
일반회계	128,327,891	128,126,209	107,438,062	20,688,147
특별회계	32,297,811	24,295,745	20,732,068	3,563,677

○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 6. 16 군수제출

-제안이유

·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함

-' 99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계	1,702,138	1,141,807	1,136,001	1,136,001	380,667	
일반회계	1,327,277	1,141,807	1,136,001	1,136,001	5,806	
특별회계	374,861	0	0	0	374,861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0. 6. 15 의원발의

-주 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2000. 6. 20 ~ 2000. 7. 4 (15일간)

· 구성인원 : 12 명

-제안이유

· 금번 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있어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
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
제안함.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6. 17 군수제출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최고액의 50%내에서
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인상코자 함

—주요골자

·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 2000. 6. 17.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6. 17 군수제출

—제안이유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화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 화순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내지 7급"으로 확대

※ 2000. 6. 17. 총무위원회 회부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6. 17 군수제출

—제안이유

· 온천법의 개정으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골자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제3조(온천수 공급) 제1항의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 하거나"를 삭제

·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급수 또는"을 삭제

※ 2000. 6. 17. 총무위원회 회부